관계성 범죄

관계성 범죄?	○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정한 관계(가족·연인·지인 등)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								
	- ^① 교제폭력 ^② 가정폭력 ^③ 스토킹 ^④ 아동학대 등								
신고 지령·출동	○제지·분리·수사 - △ 피해자 안전 △ 흉기 피습 대비, <u>가해자 검거 前・後 가・피해자 분리 확행,</u> <u>추가 피해 방지</u> ※ 순찰팀장은 여청수사팀과 관련 정보 공유 및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 지휘								
	○ 사실혼 여부 확인 의무								
현장 대응	- '교제폭력' 신고 처리 시 동거관계가 확인되면 '사실혼체크리스트' 활용'하여 사실혼 여부 의무적으로 확인 → 사실혼 확인 시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조치 강화 ★사실혼체크리스트 上 ⑥생활비공동사용 부분								
	※ △구두경고 및 데이트경고장 △피해자안내서 발부 등 피해자 안전조치 및 보호기관 적극 안내								
	현장을 단순하게 판단 후 종결 하지 않도록								
#동거	<i>시 의무적 사실혼 관계 파악 #가·피해자 분리 확행</i> 등 주의 깊게 판단								
관계성 범죄 신고 종결	○ 상세히 기록 - △ 현장 조치 적절성 △ 피해자 보호조치 여부 △ 사실혼 여부 등 상세히 기재 ○ 기능 간 공유 종결코드 종결사항 인계종결 or 타부서 인계 종결 + 소관기능통보 + '여청' 선택 후 종결								
범죄 피해자 안전조치	○제도 안내 - 사건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 종합 안내 ※ △스마트워치 지급 △임시숙소 △지능형 CCTV △신변경호 등 연계 ○대상자 관리 및 맞춤형 순찰 - 관내 안전조치 대상자 이름·사진 등 공유 및 인수인계 철저 - 안전조치 대상자 주거지 등 탄력순찰 동선에 포함, 요청 시간대 중심 순찰 실시 △순찰 실시 후 근무일지 기재								



[♥]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

Ħ	처드느	청자	人トさい		스지되	저나에	TLJL	적절히	ILR
-	ベケー	어건	건포	41	우입된	강무메	111111	의말이	사무

■ 피해자명 : ■ 가해자명 :				(□남 □여 / 연령: 세)	
적	용일 :	,		적용자 (소속/이름) :	

▶ 다음 중 맞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. (전체 문항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 시 사실혼 인정)

구분	세부 항목	체크
주관적 의사	① 과거 또는 현재 상대방과 결혼 의사로 동거 (당사자 중 일방의 의사만 있어도 체크)	
객관적 사실	② 행위자와 상견례·결혼식	
	③ 행위자와 자녀 출산(임신 포함)	
	④ 은행, 보험 등 각종 서류상에 배우자로 표시	
	⑤ 제사, 경조사 등 양가 집안 행사 참여	
	⑥ 생활비 공동 사용	
	⑦ 주소지 전입신고	
	⑧ 주변(가족, 지인, 이웃 등)에서 혼인한 사이로 인식	

※ 사실혼 인정 시 「가정폭력처벌법」상 응급조치 · 긴급임시조치 · 임시조치를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2 │ 긴급임시·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

■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24호서식]

긴급임시 • 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

			- / 1	_			
조사자 정보 성명·계급	2	박서					
기본정보	신고일시: 사건번호:						
피해자	성명: 성별: 주민번호 앞6자리: 연락처:						
	성명: 성별:						
가해 자	주민번호 앞6자리: 연락처:						
사건유형	가정폭력 □ (쌍방 □ / 사실혼 □ / 아동 □)	스토킹 🗆					
※ 가정폭력							
- (쌍방) 쌍방 가정폭	력인 경우 양 대상자에 대해 작성하십시오.						
- (사실혼) 사실혼에	해당되는 경우 「사실혼 체크리스트」를 작성하십시오.						
- (아동학대) 아동학대	대 정황 [*] 이 발견되는 경우「아동학대 체크리스트」를 활용, 세심하게 쳐	내점하십시오.					
* 만 18세 미만 아동	동에 대한 폭행(눈에 띄는 상처·멍 등)·유기·방임 등						
평가 문항							
조사방법	문항		예 (1점)	아니오 (0점)			
	1.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외상(상해)을 입히거나 폭행·협박을 함						
	2. 가해자의 행위를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존재함 (예: 이별요구, 외도 의심, 이혼, 실직, 양육권 다툼, 법원의 명령 등)						
피해자	3. 가해자가 평소에 거친 언행, 잦은 싸움 등 폭력적인 모습						
면담	4.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함 (예: 간섭, 감시, 집착, 고립, 위협 등)						
	5.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함 (예: 가해자를 무서워함, 보복을 두려워함, 생명의 위협을 느낌 등)						
피해자 면담	6. 가해자가 이전에도 관계성 범죄로 신고당한 적이 있음 (예: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등)						
및	7.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음 (예: (긴급)임시조치, (긴급)응급조치, 잠정조치,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)						
경찰 확인	8. 가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한 문제가 있음 (예: 잦은 폭음, 당해 사건에서 주취 상태, 약물 오남용 등)						
경찰 청소	9. 가해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통 움이 있음	세에 어려					
확인	10.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						
	총점		() 점			
	3점부터 긴급임시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적극	권장함					
	긴급임시·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시겠습니까?						
 최종판단	□ 예(□ 긴급임시조치 □ 긴급응급조치) □ 아니오						
-,022	※ 조치 결정한 경우, 결정 근거(중복 선택 □ 직권 □ 피해자 등 요청(신청)	가능)					
판단 사유							
추가 위험요							

구분

가 정 폭 력

아 동 학 대

스 토 킹

근거

가정폭력처벌특례법

<반의사불벌죄・친고죄>

아동복지법·아동학대처벌법

스토킹범죄의처벌법

112 접수

- · 가정구성원간 폭력은 반드시 가정폭력 코드 지정
- ▶ 기타 형사범 행패소란 등으로 지정되었어도 현장 확인 시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코드변경 요청
- → 피해아동 현재상황, 학대행위자 관련사항, 등 정보파악
- ▸ code 1이상 지역,여청수사팀 동시출동
- ▶ 아동학대신고-112로 일원화,, 상담신고는 129안내
- ▶ 스토킹 행위- 반드시 스토킹 코드 지령
- ▶ 112시스템 현출 내용(신고이력, 잠정조치 해당 여부, APO시스템상 피해자 주거지 등) 확인

출동

- ▶ 가·피해자분리 후 진술 청취 (가해자 가급적 집 밖으로 분리)
- ▶ 112신고시스템 및 APO 시스템 확인 (신고이력 · 재발우려가정 여부)
- · 아동안전 확보, 대면·분리 조사/신고자 등 보안유지
- ▶ 112시스템 및 APO시스템 이력 확인
- ▶ 지자체(전담공무원) 동행출동 요청
- ▶ 과거 신고이력 확인(스토킹, 교제폭력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신고이력 교차점검)
- · 가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안전 최우선 확보
- ▶ 진행중인 스토킹 확인시 응급조치 실시, 보고서 작성

응급

조치

현장경찰관(지역) 보호조치

▲ §5조(현장경찰 즉시 조치)

- ① 폭력행위 제지, 가·피해자 분리/①-2 현행범체포 등
- ② 상담소·보호시설 인도 (피해자 동의 時)
- ③ 의료기관 인도,④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
- ⑤ 피해자보호명령(신변안전조치) 청구 가능 고지
- →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(舊 위험성조사표) →피해자 권리고지서 전송
- ▶응급조치 보고서 (KICS-사건 처리 時)

▲ §12조(현장경찰 즉시 조치)

- ① 범죄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 격리조치
- ③ 보호시설 인도 ④ 의료기관 인도
- ⑤연고자 등에게 인도(25.6.21.시행)
- 4 응급조치 시간(72시간) 휴일 포함 時 48시간 연장 가능(최대 120시간)

※효력 72시간 내 ②-④조치시 지체없이 임시조치 신청

- ▶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(모바일)
- 허위, 오인, 비출동 신고도 작성
- ▶ 응급조치보고서(KICS-사건 처리 時)

- ▲ §3조(현장경찰 즉시 조치)【스토킹 행위】
- ① 스토킹행위 제지, 중단 통보, 처벌 서면 경고
- ② 가·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
- ③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
- ④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(피해자 동의 時)
- ▶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(모바일),
- ▶ 서면경고장(모바일) ┌ 사건처리X : 오프라인
- → 응급조치보고서 ---> 니 사건처리O: KICS

긴급 임시 (응급)

조치

<긴급임시조치>

- ▲ §8조의 2,3(응급조차에도 불규재 발우려 + 긴급 (피해자 신청 or 경찰관 직권결정)
- ①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
- ② 피해자 · 가정구성원, 주거 · 직장등 100m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
- 4 긴급임시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,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(48시간 내)
- → 긴급임시조치통보·확인서(모바일) 5점이상 ▶ 긴급임시조치 결정서(KICS)
- ▲ 300만원 이하 과태료

<긴급임시조치>

- ▲ §13조(응급조차에도 불규) 재발우려 + 긴급 (피해아동, 지자체장 등 신청 or 경찰관 직권)
- ①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
- ② 피해자 · 가정구성원, 주거 · 학교등 100m 접근금지
- ③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
 - ▲ 긴급임시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,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(48시간 내)
- ▶ 긴급임시조치통보·확인서(모바일)
- ▶ 긴급임시조치 결정서(KICS)
 - ▲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<긴급응급조치>【스토킹 행위, 범죄】

- ▲ §4조 지속·반복우려 + 긴급 (피해자 신청 or 경찰관 직권결정)
- ① 상대방 ·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
-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
- ▲ 긴급응급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 경유 48시간 내 법원에 사후승인 청구(잠정조치 별도청구)
- △ 기간: 1개월내(연장불가)
- 보호대상자확대 : 피해자,동거인,가족(상대방등)
- 긴급응급조치통보·확인서(모바일) 4점이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(KICS)
 - ▲ 1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여청수사관 보호조치

임시

(잠정)

조치

<임시조치>

- ▲ §8조(청구), §8조의3(긴급임시조치후), §29(내용)
- ▲ 재발우려(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)
- ▲ 긴급임시조치한 때
- ①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
- ② 피해자 · 가정구성원, 주거 · 직장등 100m 접근금지
-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
- ④ 의료기관 등 위탁 (판사 직권)
- ⑤ 유치장·구치소 유치 (1~3호 위반 시)
- ⑥ 상담위탁 (판사 직권)
- ※ 1~3호 : 2개월내(2개월 內 2회 연장가능) 4~6호: 1개월내(1개월 內 1회 연장가능)
- ▲1~3호 위반시 1년↓징역, 1천만원↓벌금

<임시조치>

- ▲ §14조(청구),§15조(응급·긴급임시조치후),§19조(내용)
- ▲ 재발우려(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)
- ▲ 응급조치(2~4호) · 긴급임시조치한 때
- ①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
- ② 피해자 · 가정구성원, 주거 · 학교등 100m 접근금지
-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
- ④ 친권행사 제한·정지
- ⑤ 상담·교육 위탁
- ⑥ 의료기관.요양시설 위탁
- ⑦ 유치장·구치소 유치
- ※ 1~3호 : 2개월내(2개월 內 2회 연장가능) 4~7호: 2개월내(1개월 內 1회 연장가능)
- ▲ 1~4호 위반시 2년 ↓ 징역, 2천만원 ↓ 벌금

<잠정조치>

- ▲ §8조(청구), §9조(내용)
- ▲ 재발우려(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)
- ①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
- ② 피해자, 주거 등 100미터 접근 금지
- 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
- ③-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
- ④ 유치장·구치소 유치
- ※ 2.3호,3의2호 : 3개월내(3개월 內 2회 연장가능) 4호: 1개월내(연장불가)
- ▲ 2~ 3호 위반시 2년 ↓ 징역, 2천만원 ↓ 벌금
- ▲ 3의 2호 위반시(전자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) 3년 ↓징역, 3천만원 ↓벌금